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2.

발 의 자 : 주철현 · 어기구 · 김성범
허영 · 황운하 · 윤준병
문금주 · 임오경 · 조계원
이재관 · 박홍배 · 이정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사업자,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,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레저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,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가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7항 및 제14조 신설).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과태료) ①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) 제12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명

칭을 변경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해양레저관광 협회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2조(해양레저관광 협회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</u>
<u><신설></u>	<u>제14조(과태료) ①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양레저관광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</u>